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이 재 명 ㊞

2026년 7월 7일

국무총리 한성숙

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

◉대통령령 제36499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1호 중 "특별시장"을 "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"특별시"를 "특별시ㆍ통합특별시"로 한다.

제2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"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"을 "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전세버스운송사업자

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"를 "시ㆍ도지사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제1항제7호 단서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지속적인 고유가 상황으로 인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